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16
----------	-------

발의연월일 : 2026. 1. 26.

발 의 자 : 김성원 · 송석준 · 고동진
김태호 · 박충권 · 김정재
박덕흠 · 유용원 · 최수진
이상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지역의 규모와 특성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은 자치구 시·군·도의원의 최소 정수를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차등화하고 있어 최근의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위험으로는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대표성이 약화되고 광역의회 차원에서의 정책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 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급격한 인구 변화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지방자치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5만명”을 각각 “4만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